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질병관리청 내 감염병 사회대응 정책 수립 및 위기대응 매뉴얼 개발 담당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 예방접종 도입평가 및 이상반응 관리 담당 인력 4명(6급 1명, 7급 2명, 연구관 1명), 국제 보건안보 협력 강화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인천공항검역소 해외 감염병신고센터 운영 인력 2명(7급 2명)을 증원하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업으로 인수공통감염병 대응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6급 1명)은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되, 한시 정원 1명(농림축산식품부 소속 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7급 1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 인력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과 국립검역소 등 소속기관 인력 10명(5급 2명, 6급 2명, 7급 3명, 8급 2명, 관리운영9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12.2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에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3명(5급 1명, 6급 5명, 7급 8명, 8급 18명, 9급 21명)의 평가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9급2명)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조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2명(수의사무관 1명, 수의주사 1명)”을 “1명(수의사무관 1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다.

별표 5와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2”를 각각 “210”으로 하고, 보건연구관 “72”를 “70”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14”를 각각 “212”로 하고, 보건연구관 “72”를 “70”으로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0”을 각각 “118”로 하고, 4급 이하 “119”를 “117”로 하며, 총계 및 일반직 계 “99”를 각각 “98”로 하고, 4급 이하 “98”을 “97”로 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1)의 평가기간란 및 같은 목 2)의 평가기간란 중 “202

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증원되는 별표6의 정원 2명(행정서기보·보건서기보 2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별표 5]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480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79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9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1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 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6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 ·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운전서기보	3
보건연구관	7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3
보건연구사	91
보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6]

질병관리청 공무원 정원표(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482
정무직 계	1
청장(차관급)	1
일반직 계	48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9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9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31
서기관·기술서기관·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 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 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3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 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56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7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 ·전산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보건연구 사 또는 기록연구사	53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22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57
행정서기 · 보건서기 · 간호서기 · 전산서기 · 통계서기 · 공 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8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
행정서기보 · 보건서기보	2
운전서기보	3
보건연구관	7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43
보건연구사	91
보건운영서기보	2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별표 8]

질병대응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2항 관련)

총계	710
일반직 계	7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보건연구관	2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4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보건연구관	25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4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약무사무관·간호사무관·전산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29
보건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9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보건주사·의료기술주사·약무주사·간호주사·전산주사·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00
보건주사 또는 보건연구사	14
행정주사보·사회복지주사보·보건주사보·의료기술주사보·약무주사보·간호주사보·전산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56
행정서기·사회복지서기·보건서기·의료기술서기·간호서기·전산서기·공업서기 또는 시설서기	221

행정서기보 · 사회복지서기보 · 보건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69
운전서기보	6
위생서기보	1
방호서기보	2
보건연구관	29
보건연구사	23
보건운영서기보	5
기계운영서기보	1

[별표 1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2조 관련)

1. 제3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2. 제3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수의사무관	1

3. 제32조제5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4년 12월 20일)

총계	2
일반직 계	2
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약무사무관 · 간호사무관 · 전산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연구관	1
행정주사보 · 사회복지주사보 · 보건주사보 · 약무주사보 · 간호주사보 · 전산주사보 · 통계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 (생략) ④ 인수공통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12월 31일까지</u>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중 <u>2명(수의사무관 1명, 수의주사 1명)</u> 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u><신설></u>	제32조(한시정원)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u>2023년 12월 31일</u> ----- ----- ----- -- <u>1명(수의사무관 1명)</u> ----- ----- ----- ⑤ <u>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20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7]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	.	
일반직 계			<u>212</u>	<u>210</u>	-2
	.		.	.	
	.		.	.	
보건연구관			<u>72</u>	<u>70</u>	-2
	.		.	.	

[별표 7의2]

국립보건연구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		.		.		
			<u>214</u>		<u>212</u>	-2	
일반직 계			<u>214</u>		<u>212</u>	-2	
	.		.		.		
	.		.		.		
보건연구원			<u>72</u>		<u>70</u>	-2	
	.		.		.		

[별표 9]

국립결핵병원 공무원 정원표(제28조제3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총계			<u>120</u>		<u>118</u>	-2	
일반직	계		<u>120</u>		<u>118</u>	-2	
		.		.	.		
4급	이하		<u>119</u>		<u>117</u>	-2	
		.		.	.		
총계			<u>99</u>		<u>98</u>	-1	
일반직	계		<u>99</u>		<u>98</u>	-1	
		.		.	.		
4급	이하		<u>98</u>		<u>97</u>	-1	